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2017. 6. 23.)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허 동 현]

# 목 차

I. 검토경과 .....	1
II. 제출근거 .....	1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1. 결산총괄 .....	1
2. 세입결산 .....	2
3. 세출결산 .....	2
4. 세입·세출 처리상황 .....	2
5. 일반회계 세입결산 .....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	6
9. 계속비 결산 .....	7
10. 예비비 지출 .....	8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	9
IV. 기금결산 .....	10
V. 채권액결산 .....	11
VI. 채무액결산 .....	12
VII. 보조금결산 .....	12
VIII. 기타의견 .....	13

#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7. 6. 2.
- 제출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7. 6. 8.
- 의안번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제2017~77호)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제2017~76호)

##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의회의규칙 제65조

## I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결산총괄(결산서 p19)

(단위: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이월액)
합 계	577,120	590,059	400,371	189,688
일반회계	511,522	523,685	369,344	154,341
특별회계	65,598	66,374	31,027	35,347

## 2. 세입결산(결산서 p31)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577,120	594,378	590,059	4,319	294	4,025	102.2	99.3
일반회계	511,522	527,141	523,685	3,456	281	3,175	102.4	99.3
특별회계	65,598	67,237	66,374	863	13	850	101.2	98.7

## 3. 세출결산(결산서 p33)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집행잔액 $G=C-E-F$	불용비율 G/C (%)
계	496,609	80,511	577,120	451,879	400,371	76,851	99,898	17.3
일반회계	436,414	75,108	511,522	417,019	369,344	70,625	71,553	13.9
특별회계	60,195	5,403	65,598	34,860	31,027	6,226	28,345	43.2

##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5)

(단위: 백만원)

구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590,059	400,371	189,688	38,022	28,969	8,768	4,892	109,037
일반회계	523,685	369,344	154,341	36,336	24,640	8,756	4,879	79,730
특별회계	66,374	31,027	35,347	1,686	4,329	12	13	29,307

### 5. 일반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0)

(단위: 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527,141	523,685	3,456	281	3,175	99.3
지방세		25,273	24,112	1,161	131	1,030	95.4
세외수입		18,428	16,133	2,295	150	2,145	87.5
	경세외수입	6,922	6,916	6	0	6	99.9
	임세외수입	11,506	9,217	2,289	150	2,139	80.1
지방교부세		188,705	188,705				1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798	18,798				100.0
보조금		142,646	142,646				100.0
보전수입등		133,291	133,291				100.0

###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65)

#### ○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511,522	417,019	369,344	70,625	71,553
의회운영위원회	989	806	806		183
총무위원회	241,843	186,915	182,054	8,526	51,263
산업건설위원회	268,690	229,298	186,484	62,099	20,107

○ 부서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511,522	417,019	369,344	70,625	71,553
의 회 사 무 과		989	806	806		183
총 무 위원회	소 계	241,843	186,915	182,054	8,526	51,263
	기 획 감 사 실	45,790	8,223	8,213	10	37,567
	민 원 봉 사 실	606	546	546		60
	행 정 과	60,037	54,139	54,129	31	5,877
	기 업 지 원 과	3,921	3,742	3,729		192
	재 무 과	4,659	4,356	4,356	30	273
	복 지 정 책 과	86,214	79,836	76,490	5,473	4,251
	문 화 관 광 과	12,199	10,041	8,956	1,886	1,357
	보 건 소	8,019	7,013	7,013	550	456
	평 생 교 육 센 터	8,289	7,342	7,001	490	798
	체 육 시 설 사 업 소	3,852	3,605	3,605		247
	읍 면	8,257	8,072	8,016	56	185
	산업건설 위원회	소 계	268,690	229,298	186,484	62,099
안 전 총 괄 과		9,094	7,509	6,841	1,452	801
경 제 교 통 과		15,834	13,070	12,839	882	2,113
산 림 과		28,352	23,690	21,465	4,145	2,742
환 경 과		19,670	17,130	14,151	5,168	351
건 설 과		46,917	38,619	30,049	14,969	1,899
도 시 건 축 과		48,886	36,819	21,383	20,678	6,825
농 업 기 술 센 터		76,634	69,665	57,119	14,561	4,954
수 도 사 업 소		22,441	21,983	21,824	244	373
거 창 사 건 관 리 소 사 업 소		862	813	813	0	49

##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 세 입(결산서 p421)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67,237	66,374	863	13	850	98.7
공 기 업	33,768	33,518	250	0	250	99.3
의 료 보 호 기 금	779	779	0	0	0	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10	510	0	0	0	100.0
주 차 장 관 리	1,237	626	611	13	598	50.6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6,340	6,340	0	0	0	100.0
수 질 개 선	5,181	5,181	0	0	0	100.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08	708	0	0	0	100.0
기 반 시 설	56	56	0	0	0	100.0
농 업 발 전 기 금	18,658	18,656	2	0	2	99.9

### ○ 세 출(결산서 p421)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65,598	34,860	31,027	6,226	28,345
공 기 업	32,062	21,877	19,012	4,885	8,165
의 료 보 호 기 금	780	778	778	0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07	144	144	363	0
주 차 장 관 리	610	227	227	0	383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7,012	2,812	1,863	949	4,200
수 질 개 선	5,207	5,096	5,096	0	11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706	696	696	10	0
기 반 시 설	56	56	56	0	0
농 업 발 전	18,658	3,174	3,155	19	15,484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81)

□ 이 용(일반회계):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382)

□ 전 용(일반회계): (결산서 p383)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5건	1,346,086	143,743	143,743	

※ 세부내역: 결산서(p383)

**검 토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노화산업 발전 포럼 행사 개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지도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변경, 직불사업 항목 및 대상 확대,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사업비 부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청소년 행사 지원, 청소년수련관 배치지도사 제수당 부족분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 (결산서 p385)

- 내역: 368건 52,214,428천원
- 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 ※ 세부내역: 결산서(p385)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2016.7.20. 조례 제2328호)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2016.7.26.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9. 계속비 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466)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총 투 자 액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b>합 계</b>	<b>118,667,596</b>	<b>67,174,733</b>	<b>51,477,130</b>	<b>15,733</b>	<b>25,828,338</b>	<b>15,788,323</b>	<b>10,034,742</b>	<b>5,273</b>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952,199	3,438,829	1,505,248	8,122	965,927	582,604	378,050	5,273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5,101,362	1,119,906	3,981,456	0	2,103,702	224,778	1,878,924	0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3,468,447	1,265,879	2,202,568	0	1,820,128	986,007	834,121	0
거창향노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000	226,890	73,110	0	300,000	226,890	73,110	0
농촌테마공원 조성	18,807,208	8,534,344	10,272,864	0	4,428,687	3,460,872	967,815	0
소규모 용수개발	21,902,740	11,547,001	10,348,128	7,611	674,047	178,219	495,828	0
읍면소재지종합정비	37,266,664	22,957,574	14,309,090	0	6,097,887	4,071,788	2,026,099	0
권역단위종합정비	26,308,976	18,031,138	8,277,838	0	8,877,960	6,003,993	2,873,967	0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560,000	53,172	506,828	0	560,000	53,172	506,828	0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총 9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418)

(단위: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명					
합 계			686,600	400,709	683,640	0	2,960
문화관광과	관 광	수승대영업관리	285,000	0	282,931	0	2,069
건 설 과	지역및도시	주민편익사업 추진	380,000	380,000	380,000	0	0
건 설 과	수 자 원	소하천 유지보수	21,600	20,709	20,709	0	891

##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예비비)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문화관광과 수송대 영업관리는 수송대 물놀이 익사사고(2013.6.7.)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으로 지출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고, 건설과 주민편익사업 추진 등은 수해피해 공공시설물 복구 지원 사업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48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명 시 이 월	132	101,771	36,336	
사 고 이 월	115	93,564	24,755	
계 속 비 이 월	19	198,091	9,533	

## 검 토 의 견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 사업자 선정 및 사전절차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변경, 유사사업과 연계추진, 준공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사업대상지 미선정, 토지보상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 IV 기금결산(결산서 부속서류 p517)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가)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①=②+③)
		계①=②-④	조성액②	사용액④	
계(7종)	13,235,728	149,977	952,674	802,697	13,385,705
사 회 복 지 기 금	3,919,016	107,388	235,188	127,800	4,026,404
식 품 진 흥 기 금	49,654	15,907	18,907	3,000	65,561
재 난 관 리 기 금	823,996	60,144	512,198	452,054	884,140
중소기업육성기금	6,647,709	△62,964	126,829	189,793	6,584,745
아름예술제진흥기금	500,270	48	8,048	8,000	500,318
옥외광고정비기금	208,229	26,990	29,040	2,050	235,219
체 육 진 흥 기 금	1,086,854	2,464	22,464	20,000	1,089,318

## 검 토 의 견

-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조성액은 13,385,70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52,674천원이고, 사용액은 802,697천원으로 149,977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집행도 검토가 필요함.

## V 채권액 결산(결산서 P625)

### ○ 회계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706,720	234,001	56,747	4,883,974
일반 회계	소 계	4,355,826	133,000	-	4,488,826
	전화선예치금	12,474	-	-	12,474
	학자 대여금	4,343,352	-	-	4,343,352
	회 원 권	-	133,000	-	133,000
특별 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	5,250
기금	사회복지기금	345,644	101,001	56,747	389,898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 검 토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706,720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234,001천원이 발생하고, 56,747천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883,974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389,898천원, 보증금채권이 12,474천원, 융자금 채권 4,481,602천원이며, 융자사업은 상환 기일 내에 회수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일부 융자금이 장기 회수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기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VI 채무액 결산(결산서 p633)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241)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	179,946,878 (61,672,925)	178,597,676 (61,269,668)	152,073,528 (47,261,963)	19,427,613 (10,652,226)	7,096,535 (3,355,479)	
일 반 회 계	174,541,965 (61,645,936)	173,192,763 (61,242,679)	147,059,395 (47,255,761)	19,070,955 (10,652,226)	7,062,423 (3,334,692)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507,000	507,000	144,332	356,668	6,000
	수질개선	4,897,913 (26,989)	4,897,913 (26,989)	4,869,801 (6,202)	-	28,112 (20,787)

※ 군비부담액은 61,269,668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4.3%에 해당함

※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 검 토 의 견

- 2016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78,597,676천 원으로 예산액 179,946,878천원 대비 99.2%이고, 집행액은 152,073,528천원으로 예산액의 84.5%이며, 19,427,613천원이 이월되고 7,096,535천원을 반납하였음.
- 일반회계 준비부담액은 61,242,679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5.4%에 해당됨.

## VIII 기타의견

-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며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함.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거창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회복, 지역특색에 맞는 투자전략으로 계속 사업은 완공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과 지역 간 합리적 자원배분,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재정 운용 투명성과 재정관리의 실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나,

- 예산현액이 577,120백만원이고 이월사업비가 76,85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9,037백만원으로 32.2%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자원 배분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이 523,6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30백만원(1.7%)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88,704백만원(36.0%)이고, 지방세는 24,112백만원(4.6%), 세외수입은 16,133백만원(3.0%), 조정교부금 18,798백만원(3.6%), 보조금 142,646백만원(27.2%)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 규모는 8,272,019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380,868원으로 지방 재정 자립도가 7.6%로 열악한 실정임.
- 일반회계 세출은 369,3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132백만원(3.7%)이 감소하였으며,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22.1%), 사회복지(21.9%), 환경보호(9.7%), 국토 및 지역개발(9.1%) 순으로 농업에 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복지 예산이 많았음.
- 그리고 집행률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 50.6%, 수송 및 교통이 64.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벽하게 추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후에는 대형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 일반 평상시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지만 공모 사업이나 대동로터리 등 주요투자 사업은 지연되는 등으로 군민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장기발전 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대상 사업에 대해 특별 관리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무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13,385,705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952,674천원이고, 사용액은 802,697천원으로 149,977천원이 증가되었으나,
- 기금은 모금 목표액이 있고 목표액을 달성하고 나면 목적달성을 위해 집행을 하여야 하나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고도 대다수 기금을 목적대로 집행을 하지 않아 기금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채권 관리에 있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채권은 기일 내에 회수조치 해야 하나 생활안정기금의 기일도래 채권은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어, 군 기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생활안정기금 채권연체자에 대하여는 조기 회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